

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가단9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2,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1. 4. 24.부터, 피고 C은 202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2021.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송금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나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길연

별지